다올저축은행 「ISA정기예금」 상품설명서

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
◈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◈ **이 설명서**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**참고자료**이며, **실제 계약은 ISA정기예금 특약,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**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**상 품 명** : 「ISA 정기예금」
- **상품특징** :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

2 거래 조건

☞ **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, 증서 등 계약서류에 표시됩니다.**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	■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**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**를 취급하는 **금융회사**
가입금액	■ **최저 1만원 이상**
계약기간	■ **3개월 이상 3년 이내**에서 저축은행과 ISA 취급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
적용이율	■ 신규일 또는 자동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약정이율 적용
이자계산방법	■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 (원미만 절사) ■ 월복리이자 = 원금×{(1+이율/12)^{n}-1} (n은 경과월수)
이자지급방법	■ **만기일시지급식**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
자동재예치	■ 정기예금 만기 시 "최초 계약기간" 단위 자동재예치 ■ 자동재예치 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
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	■ **해 당** :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

<table>
<tr><td>예금 해지 시 불이익</td><td>■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</td></tr>
<tr><td>중도해지이율</td><td>■ 신규일(최종재예치일) 당시 고시된 ISA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
■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
<table>
<tr><th>예치기간</th><th>이 율</th></tr>
<tr><td>1개월미만</td><td>가입일 당시의 보통예금 금리</td></tr>
<tr><td>1개월이상 ~ 6개월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50%</td></tr>
<tr><td>6개월이상 ~ 9개월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55%</td></tr>
<tr><td>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60%</td></tr>
<tr><td>12개월이상</td><td>약정이율 × 70%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특별중도해지</td><td>■ 특별중도해지 이율
1. 예치기간 6개월미만 :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
2.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: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
3.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: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
4.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: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

■ 특별중도해지 사유
※적용이율 :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 또는 약정이율
<table>
<tr><th>특별중도해지 사유</th><th>적용이율</th></tr>
<tr><td>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
- 가입자 사망, 해외이주, 퇴직, 폐업,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
-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
-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·파산</td><td rowspan="3">특별중도해지 이율</td></tr>
<tr><td>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</td></tr>
<tr><td>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</td></tr>
<tr><td>신탁보수 취득</td><td>가입당시 약정이율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분할 지급
(분할 해지)</td><td>■ 이 예금은 ISA 가입자별 예치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총 3회에 한하여 분할해지가 가능하며,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
■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불가</td></tr>
<tr><td>계약의 해지</td><td>■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ISA 취급 금융회사로부터 매도지시 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</td></tr>
<tr><td>제한사항</td><td>■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
■ 이 예금은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은 불가</td></tr>
</table>

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예금은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, 세금우대, 생계형(비과세)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 시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,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- 판매사가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,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 금융상품 명칭,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
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**판매 금융회사, 다올저축은행 고객센터(1544-6700)**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www.daolsb.com)**로 문의하실 수 있고,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. 또한 당 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**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**에 분쟁조정 등 **도움을 요청**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.